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희생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수·순천10·19사건과 관련한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희생자 직권결정시 통지의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 1) 희생자 직권결정시 실무위원회는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고 대상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토록 함

나. 희생자 직권결정시 대상자의 동의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및 제5항)

- 1) 직권결정을 희망하는 자는 직권결정 동의서를 실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제출자가 유족인 경우 유족신고서도 함께 제출
- 2) 동의서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

- 3)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에 통보
- 다. 기타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안 제14조 제6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직권결정 대상자에 대한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9조의2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위원회는 대상자(대상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② 대상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거나 공고된 희생자의 직권결정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희생자 직권결정 동의서를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서를 제출하는 자가 유족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희생자의 유족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

다.

④ 제3항에 따른 희생자 직권결정 동의서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희생자 직권결정 및 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지·동의의 절차와 방법,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희생자 직권결정 동의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희생자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신고사유	[] 직권결정 통지서 수령 [] 직권결정 공고		
	희생 유형	[] 사망 [] 행방불명 [] 후유장애 [] 수형자		
	등록기준지	당시		
		현재		
	주소	당시		
현재				
신고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희생자로 직권결정 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희생자가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사람인 경우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직권결정 대상자에 대한 통지 · 동의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9조의2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위원회는 대상자 (대상자의 사망 · 행방불명 등으 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u> <u>② 대상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 락두절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 른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 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도 공고해야 한다.</u> <u>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 를 받았거나 공고된 희생자의 직권결정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실무위원회에 제 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서를 제출하는 자가 유족인 경우에는</u>

<u>제14조</u> ~ <u>제19조</u> (생략)	<u>별지 제6호서식의 희생자의 유족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u> <u>④ 제3항에 따른 희생자 직권결정 동의서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u> <u>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희생자 직권결정 및 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지·동의의 절차와 방법,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u>제15조 ~ 제20조</u> (현행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258